

대전지방법원 2022. 1. 11 선고 2021가단933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2. 14.

판 결 선 고 2022. 1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5 지분에 관하여 2017. 5. 3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오명희

별지